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보다나은 정부

2018년 12월 10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 9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12.7.(금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전기위원회 사무국
담당과장	전병근 과장(044-203-5370) 김화영 사무국장(044-203-4590)	담 당 자	정대환 사무관(044-203-5163) 김만택 주무관(044-203-4597)

풍력발전 활성화 및 업계 애로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
① 풍황자원 측정 :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→ 원격감지계측기도 가능

② 풍황계측 측정 의무 : 30kW 이하 소형 풍력 제외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**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**하도록 하**고, 30kW 이하 소형 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**하기 위해 「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, 전기요금 산정기준,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해 12월 10일부터 시행.

< 고시 개정 내용 >

①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풍력자원 측정결과 제출가능

* 현재는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높이의 고정식 풍황계측 타워만 가능

② 30kW이하 소형풍력발전기(발전단지 총 용량 1,000kW 이하)의 경우 풍황자원 측정 의무 면제

❶ 풍황자원 계측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근거 마련

□ 현재 풍력 발전사업허가 시,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(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별표2)하고 있으나, 풍황자원 측정* 시 원격감지계측기에 대한 적용 근거 미비

* 풍황자원 측정을 위한 계측기는 고정식 풍황계측타워(마스트형(기계식 측정)), 원격감지계측기(Lidar, Sodar 등(광학식 측정))으로 구분

○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,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옴

□ 이에, 국제기준*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하여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

* IEC61400-12-1:2017 규정은 라이다를 통한 풍황자원 측정과 데이터를 인정

❷ 소형풍력(30kW 이하)에 대한 풍황계측 예외조항 마련

□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*토록 규정하고 있음

* 사업이행능력이 없는 사업자의 부지·계통선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허가 신청 前 1년 이상 풍황자원을 계측토록 규정('18.8월 고시 개정)

- 이에, 소형풍력 업계는 중·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,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을 호소

○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**소형풍력*을 설치**하는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예외조항 마련

* 설비용량 30kW 이하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,000kW 이하의 풍력발전단지

OPE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정대환 사무관(☎ 044-203-5372) 및 전기위원회 사무국 김만택 주무관(☎ 044-203-459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